

# 보수규정

개정 2017.8.18. 규정 제106호	일괄개정 2024.5.7. 규정 제176호
제정 2017.11.17. 규정 제7호	개정 2024.7.8. 규정 제179호
개정 2018.1.4. 규정 제34호	개정 2025.5.13. 규정 제192호
개정 2018.11.14. 규정 제41호	개정 2025.9.8. 규정 제197호
개정 2020.1.9. 규정 제49호	개정 2026.1.19. 규정 제210호
개정 2020.4.3. 규정 제58호	
개정 2020.5.22. 규정 제62호	
개정 2021.1.18. 규정 제73호	
개정 2021.2.10. 규정 제80호	
개정 2021. 8. 10. 규정 제95호	
개정 2022.1.17. 규정 제117호	
개정 2022.4.26. 규정 제123호	
개정 2022.12.30. 규정 제141호	
개정 2023.4.11. 규정 제143호	
개정 2023.6.30. 규정 제149호	
개정 2024.1.15. 규정 제16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정」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2026. 1. 19.>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 따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7. 8., 2026. 1. 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3. 2026. 1. 19.>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 평가급,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본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복리후생비”라 함은 이 규정 제5장에 규정된 각종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 단위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영업수당, 직급보조비, 업무추진교통비, 가계안정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조장수당, 기술수당, 선임수당, 명절휴가비,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금제도)** ① 임원과 3급이상의 직원은 연봉제로 하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봉제 시행규정에 규정하도록 한다.

②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한다.

## 제2장 기본급

**제5조(임직원의 기본급)** 임원과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직원의 봉급 기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초임호봉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편입되어 인력이 승계되는 직원의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거 획정 할 수 있다.

**제7조(호봉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별표 3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8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

서의 호봉을 확정하며,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은 별표 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5. 5. 13.>

②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9조(강임시의 호봉확정)** ① 직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②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은 별표 8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에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의 확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5. 5. 13.>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확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 확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8.>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자,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 기간
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20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제13조(원천징수등의 금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 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노동조합비 및 사우회비 등 노사합의로 공제기로 한 경우. 단,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14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임용일부터 일 단위 계산한다.

②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정액을 지급한다.

**제15조(보수의 감액)** ①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

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제1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3.>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제1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5. 13.>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 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직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30.>

**제21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수당

**제22조(상여수당)** 연봉제 대상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월 봉급액의 400%로 한다. 단,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연봉제 기준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며, 연봉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근무연수는 별표 3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

③ 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5. 13.>

**제23조의2(대우수당)** ① 최저직급인 직원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후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승진 시까지 별표 6의 대우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대우수당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한다.

③ 대우수당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중단한다.

④ 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1. 19.]

**제24조(영업수당)** ①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별표 6의 영업수당을 지급한

다.

② 해외무역 및 투자업무를 위하여 국외에 2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영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5조(파견수당)**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6의 파견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8., 2025. 5. 13., 2025. 9. 8.>

1.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국가기술훈격법」에 의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 통신, 난방, 기계분야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3. 채용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채용 시험에 합격된 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27조(장려수당)**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의2(조장수당)**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조장수당을 지급

한다.

**제28조(위험근무수당)** 위험시설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선임수당)**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시설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도법」, 「승강기법」 등에 사업장 내 법정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별표 6에 의하여 선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8.>

**제29조의2(당직수당)** 취업규정 제2장제5절에서 정한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별표 6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휴가수당)** ①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당해연도 12월에 잔여분을 산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연차휴가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상하되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유불리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한다.

**제32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

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 15., 2025. 5. 13.>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24. 1. 15., 2024. 7. 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가족수당 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⑤ 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 또는 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5. 13.>

⑥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3조(업무대행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출산휴가
2. 30일 이상의 병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3.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

**제34조(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안전보건 관리 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부·소장급 이하)에 대하여는 별표 6의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제5장 복리후생비

**제35조(복리후생비 지급구분)**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장 평가급

**제36조(평가급)** 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한다.

② 평가급은 평가대상년도의 직원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③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연도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성과급)**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예산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 제7장 퇴직급여금

**제38조(퇴직급여금)**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금의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개정 2024. 7. 8.>

**제39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 계산에 있어서는 일 단위 계산한다.

**제40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금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25. 5. 13.>

**제43조(조기퇴직수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4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60+(정년 잔여월수-60)/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② 제1항의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 잔여월수 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 **제8장 보칙**

**제45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46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의 처리는 “10원” 단위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호, 2018.1.4.>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호, 202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 2020.4.3.>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0.5.22.>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및 별표 2의 봉급기준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 2021.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21.8.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2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및 별표2의 봉급기준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임직원 기본연봉 구분표 및 별표 2의 직원 봉급 기준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24. 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24. 5. 7.>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4. 7. 8.>

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호, 2025. 5. 13.>

이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 2025. 9. 8.>

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26. 1. 19.>

이 규정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5. 13., 2026. 1. 19.>

## 임직원 기본연봉 구분표(제5조 관련)

### 1. 임원의 기본연봉

(단위 : 원)

구 분	기본연봉	비 고
이 사 장	여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 임 이 사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이사장이 결정	

### 2.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단위 : 원)

구 분	기본연봉		비고
	상한액	하한액	
2급	96,883,000	69,180,000	
3급	83,458,000	58,192,000	

[별표 2] <개정 2024. 1. 15., 2025. 5. 13., 2026. 1. 19.>

## 직원 봉급 기준표(제5조 관련)

### 1. 일반직 봉급 기준표

(월 지급액, 단위 :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공단 2급 (공무원5급)	공단 3급 (공무원6급)	공단 4급 (공무원7급)	공단 5급 (공무원8급)	공단 6급 (공무원9급)
1	1,883,700	1,612,800	1,422,230	1,325,830	1,296,940
2	1,960,430	1,682,210	1,489,330	1,342,800	1,310,550
3	2,037,250	1,752,690	1,557,290	1,405,170	1,324,160
4	2,114,590	1,826,010	1,626,470	1,468,000	1,336,440
5	2,192,460	1,898,020	1,700,140	1,540,390	1,394,930
6	2,270,590	1,969,900	1,769,970	1,603,970	1,451,990
7	2,349,100	2,044,790	1,840,020	1,668,170	1,506,340
8	2,428,010	2,120,050	1,915,180	1,728,900	1,555,220
9	2,506,520	2,195,310	1,980,280	1,787,130	1,604,220
10	2,585,560	2,267,070	2,052,580	1,843,430	1,651,800
11	2,659,660	2,329,470	2,111,210	1,898,270	1,699,760
12	2,725,970	2,391,350	2,168,020	1,948,700	1,746,310
13	2,788,750	2,448,940	2,223,000	1,997,460	1,791,550
14	2,848,800	2,504,440	2,276,450	2,046,320	1,835,240
15	2,906,130	2,561,380	2,327,660	2,098,340	1,877,350
16	2,979,840	2,613,250	2,377,320	2,143,830	1,915,940
17	3,032,760	2,663,690	2,422,280	2,187,500	1,955,600
18	3,084,100	2,712,190	2,465,580	2,229,510	1,993,320
19	3,136,980	2,758,710	2,501,460	2,269,280	2,029,830
20	3,184,460	2,803,580	2,537,880	2,307,890	2,064,800
21	3,230,470	2,843,360	2,575,570	2,344,280	2,098,460
22	3,270,770	2,878,040	2,613,650	2,376,400	2,130,440
23	3,313,280	2,907,970	2,650,300	2,406,280	2,161,260
24	3,353,970	2,945,140	2,682,270	2,434,860	2,187,910
25	3,388,680	2,977,500	2,715,170	2,461,020	2,216,120
26	3,425,590	3,011,310	2,746,230	2,485,850	2,242,230
27	3,438,210	3,042,860	2,775,480	2,511,340	2,267,210
28	3,471,370	3,069,680	2,802,930	2,535,120	2,291,000
29	3,502,420	3,097,760	2,828,280	2,556,700	2,312,960
30	3,531,690	3,123,740	2,852,070	2,576,730	2,333,510
31	3,561,180	3,149,930	2,876,060	2,596,900	2,354,230

## 2. 기능직 봉급 기준표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호봉	1,346,930	1,229,930	1,162,070	1,155,270
2호봉	1,411,090	1,289,330	1,167,350	1,157,010
3호봉	1,476,460	1,351,700	1,172,910	1,158,740
4호봉	1,542,660	1,411,210	1,219,700	1,160,490
5호봉	1,618,550	1,472,900	1,275,940	1,162,230
6호봉	1,685,420	1,533,100	1,333,540	1,163,940
7호봉	1,753,130	1,590,560	1,387,880	1,173,850
8호봉	1,816,760	1,642,020	1,438,080	1,214,110
9호봉	1,878,030	1,694,040	1,486,680	1,253,120
10호봉	1,937,140	1,744,290	1,532,280	1,289,870
11호봉	1,994,900	1,794,930	1,578,000	1,327,400
12호봉	2,047,970	1,843,910	1,620,580	1,363,600
13호봉	2,099,040	1,891,690	1,662,780	1,397,410
14호봉	2,150,640	1,937,830	1,702,240	1,431,840
15호봉	2,204,960	1,982,440	1,741,560	1,465,400
16호봉	2,252,880	2,023,290	1,777,580	1,496,250
17호봉	2,298,870	2,064,900	1,814,300	1,527,510
18호봉	2,343,100	2,104,760	1,848,960	1,558,350
19호봉	2,385,140	2,143,410	1,880,230	1,586,210
20호봉	2,425,160	2,179,970	1,912,290	1,614,600
21호봉	2,463,770	2,215,740	1,942,620	1,641,750
22호봉	2,497,090	2,249,580	1,969,240	1,666,180
23호봉	2,528,450	2,282,220	1,996,410	1,691,450
24호봉	2,558,630	2,310,760	2,022,320	1,715,730
25호봉	2,586,200	2,339,960	2,046,360	1,739,080
26호봉	2,612,120	2,367,820	2,069,270	1,761,210
27호봉	2,638,770	2,394,300	2,090,430	1,774,600
28호봉	2,664,010	2,419,010	2,109,820	1,795,180
29호봉	2,686,530	2,442,190	2,128,390	1,814,570
30호봉	2,707,670	2,464,170	2,144,770	1,833,140
31호봉	2,728,970	2,486,360	2,161,260	1,851,890

[별표 3]

### 경력환산표(제6조, 제7조 및 제23조 관련)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임시직, 고용직 제외)</li> <li>○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근무기간 포함)</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li> <li>○ 박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li> </ul>	100%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종사한 경력자가 공단의 당해 기술직군에 근무할 경우</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의 고용직, 계약직, 별정직, 청원경찰 근무 경력자가 공단의 기능직으로 근무할 경우</li> <li>○ 교육, 연수기관에서 전산,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종사경력</li> <li>○ 상장기업체에 종사한 경력자가 공단의 행정직으로 근무할 경우</li> </ul>	80%
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체(비상장회사로서 종업원 50인 이상) 근무경력</li> <li>○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력</li> </ul>	50%
정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경력에 예시된 이외의 기관, 단체, 기업체 및 직군에서 근무경력</li> </ul>	3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군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25. 5. 13. 2026. 1. 19.>

### 장기근속수당, 영업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2조 관련)

구 분	감 봉 기간중	직 위 해 제 및 휴 직			
		봉급이 8할(연봉 월액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이 7할(연봉 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이 5할(연봉 월액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 전액

[별표 5] <개정 2025. 5. 13.>

###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표(제23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비 고
일반직 및 기능직	○ 25년 이상 13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11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5년 미만 30,000원	

[별표 6] <개정 2024. 5. 7., 2025. 5. 13., 2025. 9. 8., 2026. 1. 19.>

**수당 지급기준표**(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을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상여수당	○ 기본급×400%	○ 연봉제 대상 임직원
파견수당	○ 월 600,000원	○ 파견 공무원
기술수당	○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 월 100,000원 ○ 기능장 : 월 50,000원 ○ 기사 : 월 30,000원 ○ 산업기사 : 월 25,000원 ○ 운전 및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월 40,000원 ○ 간호사, 건강운동관리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 월 30,000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 지급
장려수당	○ 월 15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 근무 직원 - 일반직(연봉제 대상자 포함) 및 기능직 직원
조장수당	○ 월 5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 조장으로 임명된 자
위험근무수당	○ 월 3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의 운전 기술과에 근무하는 자
선임수당	○ 전기안전관리담당 : 월 30,000원 ○ 전기안전관리보조 : 월 15,000원 ○ 위험물안전관리담당 : 월 10,000원 ○ 기타법정안전관리인 : 월 10,000원 ○ 소각시설법적관리인 : 월 10,000원	○ 직원으로서 특수업무(전기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기타법정안전관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법적관리인)에 선임된 자 ※ 1명에게 여러 분야의 선임이 중복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함
당직수당	○ 일·숙직근무수당 : 1회 60,000원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 숙직근무는 당직수당 지급과 별도로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함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0.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연차휴가수당	○ 월 통상임금×1.0/209×8시간×일수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특정업무수행경비	○ 월 80,000원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 경영평가 실무 담당자	○ 실무 담당자 직원(부·소장급 이하)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원 x 1/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우수당	○ 월 5만원	○ 최저직급인 직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후에도 승진하지 못한 자

[별표 7] <개정 2024. 1. 15.>

###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임·직원	월 140,000원	-3급 이상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4급 이하 :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이사장	월 600,000원	-3급 이상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4급 이하 : 보수지급일
	상임이사, 2급	월 400,000원	
	3급	월 250,000원	
	4급 이하	월 150,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월 650,000원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상임이사, 2급	월 200,000원	
	3급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연봉제 대상자	기본급×150%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직원		- 설날, 추석에 속하는 달에 각 75%지급
업무추진 교통비	이사장	월 250,000원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상임이사, 2급	월 200,000원	
	3급	월 140,000원	
	4급	월 130,000원	- 보수지급일
	5급/기능6등급	월 130,000원	
	6급/기능 7등급이하	월 120,000원	
가계안정비	연봉제 대상자	기본급×250%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연봉제 비대상자		- 보수지급일

[별표 8]

승진시 호봉획정표(제8조, 제9조 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